
2025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

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

※ “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”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, 추후 발표되는 『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4.



서울교육대학교

I. 주요 변경사항

| 전형명 | 2024학년도 | 2025학년도 |
|------|--|---|
| 수시전형 | <p>* 수능최저학력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시 전체 전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 합 9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- 단, 기회균형특별전형 I·II 및 기타특별전형은 4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, 한국사 동일 | <p>* 수능최저학력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시 전체 전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- 단, 기회균형특별전형 I·II 및 기타특별전형은 4개 영역 합 1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|
| 정시전형 | <p>* 1단계 선발인원</p> <p>1단계(2배수): 수능성적 100%</p> <p>2단계(1배수): 수능성적 80%+면접평가 20%</p> | <p>* 1단계 선발인원</p> <p>1단계(1.5배수): 수능성적 100%</p> <p>2단계(1배수): 수능성적 80%+면접평가 20%</p> |

Ⅱ. 전형별 모집인원

(단위: 명)

| 모집 시기 | 전형 유형 | 전형명 | | 2025학년도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수시 | 학생부 교과 | 학교장추천전형 | | 40 | |
| | 학생부 종합 | 교직원성우수자전형 | | 100 |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 | 국가보훈대상자전형 | 5 | |
| | | | 농어촌학생전형 | 10 |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I | 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 | 19 | |
| | 장애인등대상자전형 | | 11 | | |
| | 기타 | 기타 특별전형 | 재외국민특별전형 | 7 | |
| | | | 북한이탈학생전형 | 3 | |
| | 소계 | | 195 | | |
| | 정시 (나)군 | 수능 위주 | 일반전형 | 정원 내 | 202* |
| 소계 | | 202 | | | |
| 합계 | | 397 | | | |

Ⅲ. 전형 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

| 모집 시기 | 전형 유형 | 전형명 | 전형요소 반영률 및 전형단계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|
| 수시 | 학생부 교과 | 학교장추천전형 | 1단계(2배수): 학생부교과 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교과 성적 80%+면접평가 20% 반영범위: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(5개학기) 석차 등급 또는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 반영 * 학년별, 학기별 가중치 없음 * 이수(P)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반영비율: 석차 등급 또는 성취도가 표기된 과목(진로선택과목 제외) 70%, 진로선택과목 10% | |
| | 학생부 종합 | 교직원성우수자전형 | | 1단계(2배수): 서류평가 100% (학교생활기록부) 2단계(1배수): 서류평가 50%+면접평가 50%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 | 국가보훈대상자전형 | |
| | | | 농어촌학생전형 |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I | 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 | |
| | 장애인등대상자전형 | | | |
| 기타 | 기타 특별전형 | 재외국민특별전형 | 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 | |
| | | 북한이탈학생전형 | | |
| 정시 (내)군 | 수능 위주 | 일반전형 | 1단계(1.5배수): 수능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수능성적 80%+면접평가 20% | |

IV. 수능최저학력기준

| 모집 시기 | 전형 유형 | 전형명 | 수능최저학력기준 |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수시 | 학생부 교과 | 학교장추천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| |
| | 학생부 종합 | 교직원성우수자전형 | |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 | |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|
| | | | | 농어촌 학생전형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I | | 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 |
| |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| | | |
| 기타 | 기타 특별전형 | | | |
| | 재외국민 특별전형 | 북한이탈 학생전형 | | |
| 정시 (나)군 | 수능 위주 | 일반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능반영영역- 국어 수학 탐구(사회/과학) (제2외국어 한문은 미반영) ■ 최저학력기준-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| |

V. 정시전형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

| 영역 | 국어 | 수학 | 탐구(2개 영역) | 합계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|
| 배점(점) | 266.7 | 266.7 | 266.7 | 800 |
| 비율(%) | 33.3 | 33.3 | 33.3 | 100 |
| 점수 활용지표 | 표준점수 | | | |

※수능 영역별 환산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.

VI. 지원자격

| 모집 시기 | 전형 유형 | 전형명 | 수능최저학력기준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수시 | 학생부 교과 | 학교장추천전형 |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2025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※ 추천 인원은 고교별 재적인원 기준 3% 이내 (고3 재적인원 * 0.03,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) |
| | | 교직원성우수자전형 | -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|
| | 학생부 종합 |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|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 농어촌 학생전형 |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·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 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)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·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(동일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) ※ 부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※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·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·면으로 인정함 ※ 농·어촌소재 특수목적고(과학고, 영재고, 국제고, 외국어고, 예술·체육 계열 고등학교 등)는 지원할 수 없음 |

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I | 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|
| | | |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 |
| | 기타 | 기타 특별전형 | 재외국민 특별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(예정자 포함)한 재외국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※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 |
| | | | 북한이탈 학생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|
| 정시 (나)군 | 수능 위주 | 일반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| |

Ⅶ.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

| 모집 시기 | 전형 유형 | 전형명 |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수시 | 학생부 종합 | 교직원성우수자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류평가 시 감점 조치 |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 | |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|
| | | | | 농어촌 학생전형 |
| | | 기회균형 특별전형 II | | 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 |
| |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| | | |
| | 기타 | 기타 특별전형 | | 재외국민 특별전형 |
| 북한이탈 학생전형 | | | | |